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15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
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5. 10.

복지문화 위원회
전 문 위 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5. 10. 23.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
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남현주 의원 등 7명
- 발의일자: 2025. 10. 2.(목)
- 회부일자: 2025. 10. 10.(금)
- 검토기간: 2025. 10. 10.(금) ~ 10. 17.(금)

2. 제정이유

-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관내 청소년시설에 한정하여 생리용품을 비치·
지원하고 있으나, 범위를 확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에도 생리
용품을 비치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
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(현행)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」
- (개정)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」

- 나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다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라. 지원내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마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청소년시설 내에만 비치하던 생리용품을 달서구립도서관으로 확대하고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규정에 따라 ‘보건위생용품’을 ‘생리용품’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제명을 변경하는 등 전문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2017. 12. 12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개정으로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고 있는 생리용품에 대해 청소년시설 및 구립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, 전국적으로 국·시비 지원에 따른 저소득층 선별지원에서 소득수준과 관계 없는 보편적 복지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어,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준비미비로 고충을 겪을 수 있는 여성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과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

관계법령

□ 청소년복지 지원법

제5조(건강한 성장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,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,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·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, 제2항에 따른 건강·체력 기준의 설정·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·범위, 방법,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청소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□ 도서관법

제4조(도서관의 구분) ① 도서관은 그 설립·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국립 도서관: 국가가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

2. 공립 도서관: 지방자치단체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

3. 사립 도서관: 「민법」, 「상법」,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

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공공도서관: 공중의 정보이용·독서활동·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.